

법무부 고시 제 2025 - 408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장법인 종사자

1.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 또는 코스닥(KOSDAQ)에 상장된 법인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2.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사람

②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1.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90호, 2024. 6. 3.,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으로 연간소득이 전년도(발표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의 1.5배 이상인 사람

③ 전문직 종사자

1. 전문직 종사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소지하였을 것(단,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한다)
 - 나. 상기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국내에 합법 체류하였으며, 신청일 당시 체류기간 연장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어업기업 관리자(E-7-1) 및 해기사(E-5)가 국제상선 승선 등의 사유로 출국한 기간은 모두 국내 체류 기간에 포함한다)

④ 유학 인재

1.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사람

*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및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2.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대학의 정규과정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잠재적 우수인재

1.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 [붙임 1]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

제3조(자격 기준) 거주(F-2) 자목 체류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붙임 2]에서 정하는 각 평가항목의 합산점수 80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제3조 외국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2.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 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5.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 공공복리 ·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2025-408호>

2025. 10. 24.(금)부터 동 고시 시행하며, 시행일 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법무부 고시를 적용함

[붙임 1] 잠재적 우수인재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21.9.14. 시행)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한국천문연구원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21.4.20. 시행)
1. 기초과학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관련 (2021.7.30. 시행)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붙임 2]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기준 평가항목

1. 평가항목(최대 170점 인정)

평가 항목	공통항목				가·감점 항목	
	나이	학력	기본소양	연간소득	가점	감점
배점	25	25	20	60	40	-70

2. 공통 항목(최대 130점 인정)

가. 나 이(최대 25점)

나이	18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50세	51세 이상
점수	23	25	23	20	12	8	3
기준	신청일 기준 여권상 생년월일						

나. 학 력(최대 25점)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2개 이상	이공계 외	이공계	이공계 외
점수	25	20	20	17	17	15	15	10
기준	· 학위증(수료는 제외하며,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개 이상 : 이공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학위가 2개 이상인 경우 인정							

다. 기본소양(최대 20점)

한국어 능력	고급	중급		초급	
	TOPIK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4급/ 4단계	3급/ 3단계	2급/ 2단계	1급/ 1단계
점수	20	15	10	5	3
기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라. 연간 소득(최대 60점)

연 간 소 득	1억원 이상	9천만 - 1억원 미만	8천만 - 9천만원 미만	7천만 - 8천만원 미만	6천만 - 7천만원 미만	5천만 - 6천만원 미만	4천만 - 5천만원 미만	3천만 - 4천만원 미만	최저임금 - 3천만원 미만
점수	60	58	56	53	50	45	40	30	10
기준	· 제출 가능한 가장 최신의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에 기재된 최근 연도의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간주함 · 소득 소명 서류 미제출,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3. 가점, 감점 항목

가. 가점 항목(최대 40점)

가점 항목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중앙 행정기관 추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박 사		석 사		학 사		사회봉사		
				우 수	국 내	우 수	국 내	우 수	국 내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점수	20	20	10	30	10	20	7	15	5	7	5	1
기준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참전국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중앙행정기관 추천서 :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우수인재로 추천받은 자 · 우수대학 : 신청일 기준 최근 5개년 내 아래 대학 평가 지표 중 하나에만 선정된 경우라도 해당 가점 인정 ① QS World University Ranking(500위 이내) ②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s(200위 이내) · 사회봉사 ① 신청일 기준 3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18회 이상 및 1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7점 부여 ② 신청일 기준 3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12회 이상 및 10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5점 부여 ③ 신청일 기준 2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6회 이상 및 50시간 이상) 있는 경우, 가점 1점 부여 ④ 신청일 기준 1년 미만의 봉사활동 실적만 있는 경우, 가점 불인정											

나. 감점 항목(최대 70점)

감점 항목	출입국관리법 위반 (단위 : 만원)			형사처벌 전력(단위 : 만원)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벌금형 300 이상 형사처벌	벌금형 200 이상 ~ 300 미만	벌금형 200 미만
점수	- 30	- 20	- 10	- 40	- 30	- 20
기준	· 통고처분 - 납부일 기준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 출국명령, 강제퇴거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부과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감점 해석기준 ① 벌금형 300만원 이상이나 그 이상의 형*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인 경우 : 자격변경 등 불허 대상 - 형이 확정된 시점이 신청일 기준 3년을 경과한 경우 : 40점 감점 * 그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를 의미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포함 ② 벌금형 300만원 미만 : 형이 확정된 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항목 감점		